

| | |
|---------|------------|
| 의 안 번 호 | 제2007-21호 |
| 의결연월일 | 2007. 3. . |

의
결
사
항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 발 의 자 | 이정희의원외 3인 |
| 발 의 연 월 일 | 2007. 3 . 6. |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 의안 번호 | 제2007-21호 |
|----------|-----------|

제출일자 : 2007. 3. 6

발의자: 이정희, 최갑현,
이문상, 제갑생

1. 제안이유

- 의원이 답변서를 미리 받아서 보충질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의원의 시정질문이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하며 집행부 또는 책임있는 답변을 준비하여 시정에 대한 충실함을 꾀하고 의회의원 활동이 성과를 낼수 있는 활동이 되어 시민의 복리증진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4항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 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24시간 전에 답변서가 송부 되도록하고자 하는 것임

3. 관계법령

-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4항

4. 개정조례안 : 별첨

사천시의회 규칙 제 호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중 “24시간전까지 시장에게 도달 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를 “72시간전까지 시장에게 도달 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24시간전에 답변서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2조 (시장등의출석요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u>24시간전까지</u>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p> | <p>제72조(시장등의출석요구) ----- ----- ----- ----- ----- -- <u>72시간전까지</u>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u>24시간</u> 전에 답변서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p> |

관련법령발취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3.16]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37조의2 (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개정 2005.1.27]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